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14주제 광기의 시대와 정신장애인의 인권

I. 개념

장애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에서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완전한 참여를 방해 받는 사람(UN 장애인권리협약)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I. 개념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

정신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타

보건정책적(정신보건법)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더 넓은 의미로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포괄하여 규정(제3조 제1호)

I. 개념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적	146,898	154,953	161,249	167,479	173,257
자폐	12,954	13,933	14,888	15,857	16,906
정신	86,624	94,776	95,821	94,739	94,638
계	246,476	263,662	271,958	278,075	284,801
전체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1) 입 ·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발적인 경우)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정신보건법 제23조)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동법 제40조)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1) 입 ·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자발적인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동법 제24조)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등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의 **응급입원** 의뢰(동법 제26조)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1) 입 ·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자발적인 경우)

입원한 정신장애인 가운데 강제입원의 비율이 90%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후 퇴원결정 비율도 5% 미만

정신보건시설 입원유형 (단위: 명, %)

	총 입원 환자 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족	시장 등	기타
2006년	70,967	6,534(9.2)	49,935(70.4)	13,917(19.6)	579(0.8)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2006)

정신질환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에 의함(UN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의료의 증진을 위한 원칙: MI원칙)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1) 입 ·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자발적인 경우)

강제입원허가는 자격을 가진 **정신과전문의만**(MI 원칙 제16조 제1항)

강제입원허가의 요건 – 긴급한 해악을 끼칠 상당한 개연성 중증의 정신질환, 심각한 위험, 적절한 치료로서 최소침해, 단기간, 심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MI 원칙 제16조 제2항)

심사기관은 법률상 설치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사법기관이거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MI 원칙 제17조 제1항)

정신질환자 자신을 대변할 **대리인** 선임가능(MI 원칙 제18조 제1항)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MI 원칙 제21조)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2)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의 문제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청

약물을 투여하는 의학적 치료 상황에서 정신질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호의무자의 판단에 따라 약물이 투여될 수 있어 문제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3) 치료내용에 관한 알 권리

치료에 동의한 이후에도, 치료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의 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정신보건법 제44조)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4)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

구타나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신보건법 제55조)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5) 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치료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행동의 자유 제한

①치료목적에 적합한 자유제한인지

②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최소한 침해하는 필요한 자유제한인지

③치료의 목적과 환자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실현하는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가능.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진료기록부에 이유기재(정신보건법 제45조)

종교행사/집회/결사, 선교, 학문/예술, 사생활의 자유 제한 가능(시행령)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자유권

(6)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주거의 비밀(헌법 제16조),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 등의 개인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정신보건법 제45조)

후견주의(paternalism)적 간섭으로서 기본권 침해우려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2. 평등권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장애차별(열거되지 않은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 (간접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동항 제4호), 대리/동행하는 자에게 불리한 대우(동항 제5호), 보조견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방해(동항 제6호)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2. 평등권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인위적 사고를 통해 이익 얻는 행위를 예방하여 정신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입법목적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비판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2. 평등권

(2)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차별

장애인이 장애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합리적인 편의는 필요한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이나 변경 (장애인권리협약 CRPD)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2. 평등권

(3) 권리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

장애인의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시정명령 신청**(동법 제43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동법 제46조), 그밖의 적절한 임시조치 신청(동법 제48조 제1항), 그 밖의 근로조건 개선, 적극적 조치의 소송제기(동조 제2항)

차별의 고의성, 지속 · 반복성, 보복성, 악의성에 따른 형벌부과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사회권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생활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급여제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34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

정신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배제되어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함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사회권

(2) 건강보험 수급권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요양급여(사회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시 의료급여(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인은 대체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감소나 상실로 생활 능력이 없을 개연성이 높기에 **모든 장애인의 권리**로 이해할 필요 있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보장법, 이동편의증진법

III.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서 인식되는 정신장애인

격리와 규제가 일반적인 기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통합과 배려의 정책 방향으로 전환 모색

탈(脫)시설 권리

성년후견인제도

토 론

1.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존재인가?

2. 정신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